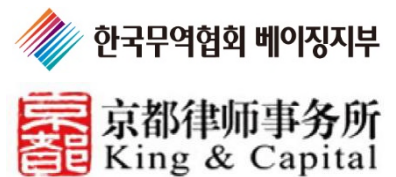




차이나

CHINA 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본 보고서의 내용은 베이징 징두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공지 드립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변호사(경도)

TEL. 86-10-5709-6000 EMAIL. jinyan@king-capital.com

중국투자회사 청산관련 법규 및 절차

1 배경

중국은 <민법전>, <회사법>,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등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회사설립 후 회사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 해산결의, 청산절차와 등기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최근 들어 외상투자기업들의 경영기한 만료, <외상투자법>의 전면실시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미중무역분쟁의 여파 등으로 중국에 투자한 한국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을 철수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기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청산의 경우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어 투자업체들이 적법한 청산이나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경영주체의 사업철수에 대한 절차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회사말소 편리화업무를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2020년 국가시장감독총국은 <회사말소청산팀 등기(备案)업무 개선을 위한 통지> 등 일련의 법규를 출범하여 청산절차 및 소요시간이 많이 간소화되었음

한편, 중국의 회사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청산책임주체는 주주와 실질적인 오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고 법인대표의 경우 적법한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사의 법인대표의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에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친 말소를 통해 적절한 투자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의 청산 및 말소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청산절차 진행 전 대응가능절차

중국에 투자한 외국업체들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한 상황일 수 있음. 따라서 청산절차 진행 전 아래의 대응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가. 휴업

- 기존 중국의 <회사법> 및 <회사법인등기관리조례>(2022년 3월 1일 폐지)는 회사설립 후 6개월간 경영활동을 시작하지 않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회사법은 연속 6개월로 규정) 휴업으로 간주하여 회사등기기관에서 회사등기를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휴업 6개월 경과 시 회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함
-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들이 대량 발생하면서 선전(深圳) 등 일부 지역에서 휴업제도를 도입, 2022년 3월 1일 시행된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는 휴업과 관련된 규정을 함으로서 회사에 휴업권을 부여함
-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제30조는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시장주체는 자체적으로 일정기간동안의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이 휴업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남

- 회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우선 시장등기기관에 휴업등기(备案)를 신청해야 함. 휴업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가 경영활동 재개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재개하거나 휴업 3년이 만료 또는 신청한 휴업기간 만료 시 정상경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됨. 3년이 만료된 시점에서만 일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말소절차를 진행해야 함. 등기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대중에 회사의 휴업비안, 휴업기간, 휴업 기간동안 사법문서 송달주소 등 내용을 공시함
- 유의해야 할 점은 휴업기간동안 노동자의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임.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는 휴업기간동안 법에 따라 노동자와 협상하여 노동관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휴업기간동안 노조와 협상하여 노동계약변경내지 해지와 관련하여 합의하며, 노조가 없을 경우 노동자와 직접 협상함. 만일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의 정책을 참조하여 휴업기간동안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생활비를 지급함
- 또한 휴업중인 회사가 경영활동 재개 시 30일 이내에 국가회사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휴업종결을 공시해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등기관리기구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구조조정(경제성 감원)

-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및 <회사경제성감원규정>에서는 회사의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20명 이상 또는 20명 미만이지만 회사총노동자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를 감원하고자 할 경우 경제성 감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제성 감원 시 아래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1) 30일전 노조 또는 전 임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경영자료를 제공
 - 2) 인원감축방안을 제출하며, 방안에는 감원대상자 리스트, 감원시간 및 진행절차, 법률 및 법규에 부합되고 집단노동계약의 약정에 부합되는 감원인원 경제보상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3) 감원방안에 대해 노조 또는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 4) 해당 지역의 노동행정부서에 감원방안 및 노조 또는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보고하고 노동부서의 의견을 수렴.

5) 구조정 계획을 정식 발표하고 감원인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며, 경제보상금 지급 및 감원증명서 발급. 경제보상금은 N+1(근무연한월수+한달)로 계산함

- 유의할 점은 감원 시 '우선유용인원'과 '감원불가인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우선유용인원은 장기고정계약자 및 무기한 노동계약체결자, 가정에 기타 취업인원이 없고 부양해야 할 노인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자를 의미함. 감원불가인원은 산재의심환자가 진단 또는 관찰기간내에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 비산재로 규정된 치료기간 중 노동자, 임신·출산·수유기 중인 노동자 및 근속기간 15년으로서 정년퇴직까지 5년미만인 노동자를 포함함
- 또한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직원채용 시 경제성 감원 노동자를 우선 채용해야 함

다. 자산 및 지분매각

- 자산 및 지분매각은 주로 제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회사의 지분전체를 매각하여 투자를 회수하는 방안으로,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함
- 다만 유의할 점은 자산매각 시 토지나 건물 매각의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로서 정부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을 때 양도불가 등의 조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업용부지 매각의 사용용도와 맞는 매수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임
- 또한 지분양도의 경우 '한중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중국 내 지분의 양도는 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지만, 만일 지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자산이 50% 이상일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지분양도시 세무기관으로부터 부동산증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음

3

청산 및 말소절차

가. 외상투자회사 청산제도의 연혁

- 1996년 현 상무부의 전신인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을 발표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진행이 가능할 경우 보통청산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 진행이 어려운 경우 기업의 동사회 또는 투자자 및 채권인은 기업심사 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업심사비준기관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로서 당해기업의 청산절차는 기업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함

- 2008년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이 폐지되고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업무는 <회사법>과 삼자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따르도록 현지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외상투자법>이 정식 출범하면서 삼자기업법이 폐지되어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업무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상무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산업이외의 일반외상투자기업의 청산절차는 내자기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됨

나. 청산유형

(1) 파산청산

- 파산청산은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및 관련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또한 회사자산이 전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현저히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채권자 또는 회사가 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이 파산절차개시를 결정할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 명부에서 공개추첨 등의 방식으로 파산관재인을 지정하여 파산청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강제청산이나 자체청산 중 파산절차에 이를 경우 법원은 청산팀을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강제청산

- 자체청산조건에 부합되는 회사가 기한 내 자체청산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경우에는 자체청산조건에 부합되지만 만기내 청산팀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청산팀을 구성하였지만 일부러 청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법으로 청산을 진행하여 채권인 또는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채권인은 법원에 청산팀을 지정하여 청산 진행을 신청할 수 있음
- 강제청산 시 청산팀구성원은 (1)회사주주, 이사, 감사, 임원; (2)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3)상기 사회중개기구 중

관련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인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강제청산팀 구성원의 인원수는 기수여야 함

(3) 자체청산

- 회사가 법적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주들의 자의에 의해 회사해산을 결정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 자체청산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됨

다. 청산절차

- 본 보고서의 청산절차는 자체청산을 위주로 설명함

(1) 청산사유

- 회사의 청산은 회사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개시로서 법적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말소하게 됨.
해산사유에는 자의적인 해산과 강제해산이 있음

1) 자의에 의한 해산

회사 또는 주주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로서 회사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기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주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정 및 해산결의를 진행하거나,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등이 포함됨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에 대해 결의하며, 2/3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동의해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결권의 2/3이상이 동의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2) 강제해산

강제해산은 회사 또는 주주의 자의가 아닌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해산으로서 행정결정에 의한 해산과 사법판결에 의한 해산이 있음

행정결정에 의한 해산은 회사의 행위가 법률법규를 위배하여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질서에 해를 끼쳐 행정기관으로부터 직권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영업집조취소, 폐쇄명령 또는 취소명령을 포함함

사법판결에 의한 해산은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존속이 주주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타 루트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회사의 10%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의 소를 제소하여 법원이 해산을 판결한 경우임

강제해산의 경우, 회사가 강제해산결정 또는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청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2) 청산절차

1)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전체 주주가 참여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청산 및 말소사항을 의결하고 회사의 말소등기신청서에 서명함

2) 청산팀 구성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회사의 재산과 채권채무의 정리를 책임지도록 함.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회사의 주주(회사의 주주가 법인일 경우 관련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에 참여할 수 있음)로 구성되고 주식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인원으로 구성됨. 상기 기한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법원에 강제청산을 신청할 수 있음

청산팀은 구성과 동시에 시장감독국에 청산팀구성원과 책임자를 등기(备案)해야 함

청산팀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

- ① 회사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 ② 청산 공고, 채권자에 서면 통지
- ③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현안 업무 처리
- ④ 미납 세금 및 청산 과정 중 발생한 세금 정리
- ⑤ 채권 채무 정리

- ⑥ 회사 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 ⑦ 청산회사 대표로 민사소송 참가(소송이 있을 경우)

3) 청산공고 및 채권자통보

청산팀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국가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 청산팀정보를 공시함. 또한 구성일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청산과 관련된 채권인공고를 발표함. 채권인공고는 신문 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발표할 수 있으며 공고일은 45일임

4) 행정, 세무, 채권 등 정리

청산팀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자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회사 의결기구의 승인을 취득하며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 정리, 청산과 관련된 현안업무 정리 및 회사가 체납하거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청산활동을 진행함

5) 회사재산분배

청산팀은 회사자산을 정리하여 청산방안을 작성함. 청산회사의 자산의 분배순서는 아래와 같음

- ① 청산비용 지급(청산비용은 청산회사의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공고, 소송 및 중재 등 비용, 청산팀 구성원 보수, 변호사 등 자문비용)
- ② 직원의 급여,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비용
- ③ 미납된 세금
- ④ 채권자의 채무상환
- ⑤ 잉여자산 주주에게 배당

6) 청산보고서 작성

청산팀은 자산분배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감독국에 제출하여 회사의 등기말소를 신청하여 회사를 종결함

라. 말소절차

(1) 통상 말소절차

회사자산의 청산완성 후 세무,登記, 사회보험, 세관 등 말소절차를 진행함

1) 세무등기 말소

세무등기 말소 시 세무부서는 주로 청산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세금완료증명> 또는 <세무등기말소증명서>를 발급함. 세무등기말소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부서는 아래의 세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함

① 세무관련 사안이 없는 납세인

회사설립 후 세무관련 사안을 취급하지 않은 납세인이 세무기관에 세무청산을 취급할 경우 세무기관은 영업집조에 근거하여 세금완료서류를 발급함.

② 하자용납가능 납세인

하자용납가능 조건이 부합되는 아래의 납세인은 세무말소 시 자료가 완비할 경우 즉시 세금청산완료서류를 발급하고 자료가 미비할 시 납세인의 자료보충승낙서를 제출 후 즉시 세금완료서류를 발급함

- 세무관련 사안이 있지만 영수증을 수령한 적이 없거나, 체납세금 및 과징금이 없는 납세인

- 세금신용등급이 A과 B급인 납세인으로서 세무조사상태에 처해있지 않고 체납 및 벌금이 없으며 증치세전용영수증 및 세금공제설비를 반납한 납세인

③ 기타 납세인

상기 납세인 이외의 납세인인 경우 세무부서는 세무조사 후 납세인에게 <세무사항통지서>를 발급하여 미완결사항에 대해 고지하고 납세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 후 세무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회사등기 말소

청산팀은 시장감독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함

- ① 등기말소 신청서
- ② 주주총회 의결
- ③ 청산보고서
- ④ 세금청산완료증명서(세무기관과 온라인 정보공유시 제출할 필요 없음)
- ⑤ 영업집조원본과 사본
- ⑥ 지사 등기말소증명(지사가 있을 경우)

3) 사회보험등기 말소

회사의 등기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기기구에 사회보험등기 및 기타 관련 서류의 말소를 신청, 신청전 사회보험관련 미납금을 납부완료해야 함.

4) 세관통관업체 비안 말소

회사가 세관 및 통관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 업체일 경우 국제무역 단일창구인" (<http://www.singlewindow.cn>) 、 “인터넷+세관” (<http://online.customs.gov.cn>) 에 통관업체 말소신청을 제출함. 단 통관관련 미납 및 체납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대금완납 후 통관업체비안을 우선 말소 후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회사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5) 은행계좌말소

계좌개설은행에 계좌말소 신청. 외환업무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 외환업무등기도 말소함.

6) 회사직인말소

회사는 통상 3개의 직인, 회사도장, 재무도장, 법인대표인감이 있으며 해당 직인에 대해 직인을 등기한 공안기관에 폐쇄 및 말소를 진행함

(2) 간이 말소절차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채권채무상환완료한 회사(상장회사 제외)의 경우 간이 말소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말소 시 미완결 비용, 직원급여, 사회보험비용, 법정보상금, 세금미납 등 채권채무가 없어야 함. 또한 외상투자회사의

경우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회사는 제외됨

간이 말소의 경우 세금관련 사항을 취급한 적이 없거나 취급하였지만 영수증 수령, 미납(체납) 및 벌금 및 기타 미완결 세금사항이 없는 납세인의 경우 세무부서의 세금청산완료증빙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간이 말소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간이 말소절차의 청산공고일은 20일(통상의 경우 45일)임. 공고기간 만료 후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나 기관(세무기관포함)이 없을 경우 만기 20일 내에 회사등기 말소를 취급함

(3) 특수상황시의 대응방안

1) 주주 연락불가 또는 비협조시

주주의 연락불가, 비협조로 인해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서면 또는 신문(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고하여 전체 주주에게 통지하여 주주회를 개최한 후 법률 및 정관에 규정된 의결비례에 따라 의결 후 청산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말소절차 진행

2) 자체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주주가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주주 또는 채권인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강제청산을 신청할 수 있음. 만일 비협조 주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일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3) 영업집조, 직인분실 시

회사가 영업집조를 분실했을 경우 국가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 영업집조 분실공고를 발표한 후 해당 공고에 근거하여 말소절차 진행가능함. 직인분실 시 전체 주주가 서명날인하거나 청산팀책임자가 서명확인하여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진행할 수 있음

4) 주주가 이미 말소된 경우

주주가 이미 말소되어 청산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 말소된 주주의 승계인이 있을 경우 해당 승계인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계인이 없을 경우 말소된

주주의 주주(출자인)가 청산 및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외국회사의 경우 해당 권리인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및 이에 대한 공증인증서류가 필요함

마. 청산절차 진행 시 유의할 점

(1) 청산 시 노동관계의 문제

1) 노동계약 종료

<노동계약법> 제 44조에 5항에는 고용업체가 영업집조 취소·폐쇄명령·말소를 당하거나 또는 고용업체가 자체적으로 조기해산을 결정할 경우 노동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회사가 주주결의를 통해 조기해산을 결정하여 청산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 회사가 말소되게 되며 이로써 고용업체의 주체자격 상실로 인해 노동관계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어 노동계약의 종료로 이어지게 됨. 다만, 중국의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에는 회사의 자체청산의 경우 노동계약 종료의 시점을 언제로 해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음

법적 이론으로는 회사가 등기기관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하여야만 고용업체로의 주체자격이 상실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직원과의 노동계약 종료,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정산 등을 청산업무의 일부로 진행하기 때문에 말소등기일을 실제 노동계약종료일로 처리하기에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모순되는 어려움이 있음

실제사례를 살펴보면 자체청산을 진행하는 회사가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의 적법성은 회사가 실제 청산업무의 진행상황, 계약종료 직원이 청산회사에서 맡은 업무, 해당 업무가 청산절차진행 시 적절한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즉 회사가 <회사법>에 근거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업무를 시작하였을 시 청산목적인 회사말소의 법적결과를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그 과정에서 임의의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노동계약종료 시점으로 확정할 경우, <노동계약법> 제44조 5항을 의거로 하는 노동계약종료라고 적법성을 인정받게 됨

2) 경제보상금의 지급

<노동계약법> 제46조에 의하면 고용업체의 해산으로 인한 노동계약 종료의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법률 제47조에 근거하면 경제보상금은 근무 1년 당 1개월 월급, 6개월 미만은 0.5개월 월급의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기준은 노동계약 해지 직전 12개월 평균월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해당 근로자의 월급이 해당 지역 직원평균월급의 3배를 초과할 경우 평균월급은 해당 지역 직원 평균월급의 3배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고 최고 보상연한은 12년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노동계약 해지제한 직원에 대한 특별처리

<노동계약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로 인하여 장애가 있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직원, 의료기간내 직원 및 임신·출산·수유기간의 여직원, 해당 회사에서 15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까지 5년미만인 직원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 40조 규정의 일반적인 과실성 계약해지 및 제 41조 규정의 경제적 감축으로 인한 노동계약해지의 이유로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하지만 회사의 조기해산으로 인한 노동계약의 종료는 동 조항의 제한적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음. 즉 42조에 열거된 경우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자체청산의 법적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다만, 산재직원일 경우 각지역의 사회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차적으로 전액 산재취업보조금(伤残就业补助金)을 지급 및 산재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전액 산재의료보조금 발급절차를 취급해 주어야 함.

(2) 자본금 미납

회사청산 시 주주가 미납자본금이 있을 경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미납자본금은 회사의 청산자산에 귀속됨. 따라서 채권인은 미납자본금부분에 대해 자본금을 미납한 주주 및 회사설립 시 기타 주주 또는 발기인에 대해 미납자본금범위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미납자본금은 여전히 청산자산에 귀속되기 때문에 납입완료 후 관련 청산비용, 채무이행 등에 사용되어야 함

(3) 정부 보조금 문제

외상투자기업은 운영과정에서 정부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지원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운영해야 하는 등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따라서 청산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지급계약 및 조건을 검토하여 보조금 반환,

위약금 등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야 함

(4) 서류보관 문제

회사는 청산 전 및 청산과정에서 회사의 주요자산, 장부, 주요서류 등에 대해 보관하여 향후 해당 서류미비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연대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회사청산완료 후 <회계서류관리방법>에 따라 서류의 유형에 따라 10년, 30년 등 보관의무를 이행해야 함

바.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1) 주주 및 실질적인 오너의 책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회사법적용에 대한 사법해석은 주주의 청산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주주 및 실질적인 오너가 법정기간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회사자산의 축소, 유실, 훼손 등 손실을 초래할 경우 채권인이 그 손실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주 및 실질적인 오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재산, 장부, 중요문서가 소멸하여 청산할 수 없을 경우 채권인이 연대책임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는 주주가 청산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하여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는 채권인의 채무주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주 및 실질적인 오너는 적법하게 청산 및 말소절차를 하지 않아 청산불가 또는 청산없이 말소한 손실에 대해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 내지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2) 법인대표의 책임

만일 적법한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회사가 취소될 경우, 법인대표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회사의 법인대표 및 임원으로 재임할 수 없음

(3) 법률책임

1) 출국금지

중국내 민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경우 주주 및 법인대표는 출국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음

2) 중국내 재투자시 불이익

만일 적법한 말소절차를 하지 않아 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된 경우 3년내 해당 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리스트에 등재된 경우 투자자의 명의로 중국에 재투자를 할 수 없음

3) 신용상실 피집행인 등재

만일 적법한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주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판결 후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신용상실 피집행인에 등재되고 중국에서 고소비가 제한됨

4 결론 및 시사점

- 상기와 같이 중국투자회사가 회사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 해산선고, 청산팀을 구성하여 회사자산정리, 세금완납, 채권채무정리, 직원급여 및 사회보험료 납부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회사청산이 끝난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말소등기를 진행하여야 적법하게 종료됨
- 상기 절차는 중국의 비즈니스환경개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기존에 비해 많이 간소화됨. 따라서 중국투자회사는 투자철수시 상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회사를 종결하여 연대책임 등 의무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첨: 회사자체청산 절차표

자체청산절차표

No.	내역	취급기관	비고
1	해산에 대한 주주결정 및 주주총회 결의	회사 주주	
2	청산팀 구성	회사 주주	
3	청산팀 및 말소등기(备案)	시장감독국	온라인등기(备案) 가능
4	청산공고 및 채권자통지 (10일 이내 통지)	국가기업신용정보 사이트에 공고	공고후 45일 후에 말소등록 가능
5	청산방안작성 및 채권채무, 자산정리	청산팀	재무제표 및 재산리스트작성 후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함
6	세무말소	세무국	조건이 부합될 경우 승낙서 제출을 통해 기한을 축소할 수 있음.
7	세관말소	세관	온라인 취급가능
8	영업허가증 말소	시장감독국	세무말소, 세관말소 등은 온라인 공유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말소증명 제출하지 않아도 됨
9	사회보험등기 말소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10	은행계좌 말소 및 외환등기 말소	계좌 개설은행	잉여자산이 있을 경우 계좌말소 전 주주에게 잉여자산을 분배함
11	직인 말소	직인이 등록된 공안기관	